

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
([]지정시험 품목 변경 []시험내용 변경 []지정 받은 사항 변경)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25일
신청인	명칭	국문			
		영문			
	대표자의 성명	국문			
		영문			
	주소	국문			
		영문			
시험을 하려는 품목, 시험내용 또는 지정받은 사항 변경 내용					
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40조제1항,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(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 변경)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신규지정, 시험품목 또는 시험방법 변경 시> 1. 지정시험기관의 연혁·설립목적·주 기능·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(추가지정 시는 제외합니다) 2.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(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) 3.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·교정 관리 계획서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(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 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, 소재지, 주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.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.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.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.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·검사기관 인증서(추가지정 시 제외합니다) <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>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	수수료
		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<신규지정, 시험품목 또는 시험내용 변경 시> 1. 국가기술자격증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